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1. 추진 개요

가. 3. 5. 전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안내문 및 희망서 배부

나. 3. 10. 프로그램 희망서를 토대로 방과후학교의 부서 확정

다. 3. 1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모집 공고(외부강사 필요시 진행)

라. 3. 18. 방과후학교운영소위원회에서 외부강사의 서류를 심사하고, 적격자 선정함

마. 3. 19.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계약 체결

바. 3. 24. 1학기 방과후학교 시작(6.27 종료)

사. 8. 25. 2학기 방과후학교 시작(12.12. 종료)

2. 프로그램 운영

가. 운영 방침

1)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조화롭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2)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취약계층 등 학생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나)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심리·학습·진로·진학 상담 등 병행

다)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의 선택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 금지

가) 근거

(1)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제3997호, 2015.5.8.)

(2)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운영 지침(교육혁신과-15409, 2017.7.17.)

4) 저소득층자녀 등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인근 학교 학생에게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5) 학교의 장은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사를 교체한 경우(개인위탁 및 업체위탁 강사 포함),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

6)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공교육정상화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

7)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복습 중심의 학생 수준을 고려한 심화·보충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

8) 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교과 진도 나가기나 시험문제 출제 금지

9)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더딤학생 해소 및 학력 신장과 연계하여 운영

10) 방과후학교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관리

1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

12) 방과후학교는 해당 학교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도 참여할 수 있음

가) 학생 소속 학교: 프로그램 운영학교에 참여 요청 공문 발송

나) 프로그램 운영학교: 다른 학교 학생을 포함한 수강생 관리(내부결재)

나. 프로그램 편성 방침

1) 수요조사 후 선호도가 높은 분야 고려
2) 무학년 선택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권장
3)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중학교 50% 이상** 개설 권장
4) 프로그램 편성 시 유의사항
   가) 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학년 교육과정의 진도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수준별 반편성 또는 교과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은 운영 금지
   나)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강제적인 보충수업 금지
   다) 학습지, 문제풀이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지양
   라) 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서는 강사별로 작성 및 활용
   마) 연간 운영계획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바) 원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는 단위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사) 공표된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관련 법적 권한 확인 후 활용
   (KERIS 연구보고 TM2020-27(2020.10.30.)참고)
   아) 방과후학교를 원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긴급소통 체계 구축, 사전 안내, 기반 조성 등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행

다.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1) 프로그램 수요조사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위해 사전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사항 반영
2) 조사내용: 희망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수준, 운영 시간 등
3) 조사방법
   가) 온라인 설문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수요 조사 실시
   나) 학년말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시 차기 학년도 수요 조사 병행 실시

라. 운영 시간

1)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수업 이전**(0교시)**, 정규수업 중간(점심시간 포함) 또는 늦은 시간**(22시)** 이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교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1시간 단위 수업을 40~60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강사료 지급에 있어 **그 최소 기준은 중학교 45분**으로 함

마. 교재 사용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는 프로그램별로 학생 수준에 따라 강사(업체)가 자체 개발한 것을 사용하며, 부득이 외부 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학생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2)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교재(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음
3)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금지

※ 교재선정 시 유의점

-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강매하는 행위 금지
- 학습교재의 채택 대가 수수 금지
- 강사가 교재비(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를 별도로 징수하여 일괄 구매하는 행위 금지
- **학교에서 교재를 구매할 경우, 스쿨뱅킹을 통한 징수 후 교재 판매업체(업자)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 **업체위탁 시 교재.교구 활용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받아야 함**
- **교재.교구계약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계약과 분리계약 할 수 있음**

바.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1) 학생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고, 전인교육 실천(수강생 체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인격 모독하는 등의 언행 금지)

2) 학생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대비

가) 앱(APP), 문자 서비스(SMS) 제공, 학교 배움터자원봉사자 활용 등 적극적인 학생 안전관리 대책 강구

나)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대비

다) 인근 경찰 지구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 체계 구축

3)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후 학교의 장(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나) 긴급한 사항의 경우 선 조치 후 즉시 보고 등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가)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 활동 자제

나)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불가피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

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편성부서·시간·최소인원

구분	순	부서명	활동 시간	운영시간	장소	강 사
특기적성	1	배드민턴반	월,수 15:30~17:00	학기당 40시간 (2시간씩 20회)	강당	구자춘
	2	공예반	월,수 15:30~17:00		미술실	김혜림
	3	배구부	수 15:30~17:00	학기당 20시간 (2시간씩 10회)	강당	강민규
	4	중국노래반	월 15:30~17:00		중국어실	강명화
	5	원어민 영어회화반	월 15:30~17:00		영어실	Cute Theko
	6	밴드반(폐강)	강사 섭외 불가능으로 폐강함.			

※ 신청자 수가 적거나, 강사 섭외가 여의치 않은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요일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순	부서명	활동 시간	비 고
토요 방과후	1	토요스포츠-테니스	토 09:00~11:00	교육청 지원
체육활동	2	아침운동 신명나게	주중 아침 프로그램	교육청 지원
	3	맞춤형 체력향상 프로그램	주중 오후 프로그램	교육청 지원

구분	순	부서명	활동 시간 및 대상	비 고
교과보충	1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중(전교생,기초학력미달)	교육청 지원
교과심화	2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중 (3학년, 교과심화 신청자)	시청 지원

※ 교육청 및 시청 사업 선정 및 예산지원에 따라 운영 시간 및 강좌 운영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분야별 평가 내용 및 시기

평가 분야	평가 내용	평가 시기
프로그램 공개	○ 프로그램 준비,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운영 효과 **- 프로그램별 1회 이상 프로그램 공개 실시**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평가자 및 평가 시기를 결정하여 실시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프로그램 진행 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자체 점검·평가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및 학습 계획 운영 전반 등	
결과 공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연 1회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4. 개인위탁

가. 강사 선정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의 장		계약
강사 선정 계획 심의(자문)	⇒	개인위탁 모집 공고 등록일 제외 (4일 이상)	⇒	제안서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심사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프로그램 위.수탁계약 체결

나. 강사 범위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계획에 의해 선정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현직교원, 개인위탁강사 등으로서 학교의 장과 계약한 자와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

다. 개인위탁강사 모집 공고

1) 공고 개요

가) (공고기간)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4일 이상**의 기간(**재공고는 3일 이상**)

나) (공고방법)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고

다) (공고절차)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치되,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공고기간 3일, 등록일 제외)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1인 응모 시에는 재공고 절차 없이 진행 가능

라)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 없이 대체 강사를 계약하여 진행 가능

라. 개인위탁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학교의 장)

1) 강사의 구분

가) 현직교원

(1) 현직 교원은 강사 참여를 지양하되, 단위학교 프로그램 및 특수 상황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함.

(2)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직교원의 강사료는 **38,000원** 지급

(3) 부득이한 결강 시, 연간계획에 의해 개설된 수업으로 교체 또는 대체로 진행하면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대체인력비 시간당 **15,000원** 지급 가능

나) 개인위탁 외부강사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해당없음으로 회신받은 경우 학교장과 1:1 프로그램 개인 위·수탁 계약 체결

(2) 개인위탁 외부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 강사료는 시간당 40,**000원 지급**

(3) 갑작스런 학교의 행사나 공휴일, 휴업일, 방학, 천재지변 등으로 휴강할 경우, 보강 또는 환불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4) 불가피한 사정(결혼, 부모상,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강사와 협의하여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재)계약 시마다 새로 해야 함

(6) 개인위탁강사는 주 14시간까지만 가능함.

(7)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서 1부**

※ 채용 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단, 보건소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적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 가능함

(8) 부득이한 결강 시, 연간계획에 의해 개설된 수업으로 교체 또는 대체로 진행하면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대체인력비 시간당 10,000원 지급 가능

마.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1) 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1,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2) 노무제공자인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보험 관리(성립, 자격취득, 상실) 및 보험금 납부

3)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의 고용보험금은 방과후학교 운영비에서 편성 납부

바. 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1)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2) 위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는 2024.1.1.부터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5. 기대효과

가. 방과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로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나. 방과후학교 내실화로 운영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격차 완화

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제고

라. 맞춤형 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과 학력 신장 기여

마.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계발